

■ 계약학과 대학원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

창학이념을 기반으로 산업체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운영하여, 실무역량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

(관련근거 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함)

1. 모집과정 및 인원

가. 신입생

대학원	구 분	학위 과정	학 과	모집인원	비고
일반대학원	대학원	박사	아동보육학과	13명	재교육형, 정원의 모집
			상담학과	5명	
			복지경영학과	12명	
특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	20명	
			아동보육학과	13명	
			복지경영학과	12명	
	교육대학원		상담학과	10명	
총계				85명	

※ 학과(전공)별 최종합격자가 일정인원 미만시 선발하지 않습니다(선발하지 않는 경우 전형료 반환함)

나. 편입생

대학원	구 분	학위 과정	학 과	모집인원	비고
일반대학원	대학원	박사	아동보육학과	00명	재교육형, 정원의 모집
			상담학과	00명	
			복지경영학과	00명	
특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	00명	
			아동보육학과	00명	
			복지경영학과	00명	
총계				00명	

## 2. 지원자격

### 가. 신입생

구 분	지 원 자 격
지원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공학과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며 학위과정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li> <li>2. 추천서와 재직증명서가 동일 산업체에서 발행되어 서로 일치하는 근로자</li> <li>3. 산업체에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li> <li>4.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제출 가능자(교육부 유권 질의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지원자제출 의무사항)</li> <li>5. 산업체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학금 및 등록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 하는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li> </ol>
2. 산업체 범위	<p>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산업체 등의 범위)</p> <p>①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li> <li>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li> <li>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li> <li>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li> </ol> <p>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p>

### 나. 편입생

구 분	지 원 자 격
2학기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b>동일 전공분야</b>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li> <li>- 상기 신입생 지원자격 및 산업체범위에 해당하는 자</li> </ul>
3학기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b>동일 전공분야</b>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li> <li>- 상기 신입생 지원자격 및 산업체범위에 해당하는 자</li> </ul>

### 3.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접수]

신입학 제출서류 목록	
1. 계약학과 입학원서(본교 양식) 1부 2. 입학구분 대학, 대학원(석, 박사)별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1부(산업체가 발급)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1부(개인) - 재직증명서 1부 6. 계약학과 입학추천서(본교 양식) 1부 7. 원천징수영수증 1부 8. 예·결산 총괄표 및 세입·세출 결산서 각 1부(정보공시서류 - 아동보육학과 지원자만 해당) 9. 계약학과 지원자 사전 고지 확인서 1부 10. 계약학과 설치 운영 계약서 2부(간인 필수) 11. 학위과정 연구계획서 1부(박사 지원 해당자)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본교 양식) 1부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접수◀◀	
<b>&lt; 우편 접수자 유의사항 &gt;</b>	
1)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시까지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겹봉투에 **『협성대학교 계약학과 입학원서 재중』 이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 지연 도착, 첨부서류 미비, 원서 기재 오류, 주소 불분명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해외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석사 지원자는 학사학위, 박사 지원자는 석사학위)  
 - 학위기 및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서 제출

### 4. 계약학과 전형일정

전형 구분		일정	비고
원서 접수 내용	서류전형 방문 및 우편	2026. 2. 4(수) ~ 2.10일(화) 16:00	- 방문접수 : 인문사회관 524호 계약학과 교수연구실 TEL : 031-299-0849 - 우편접수 :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1833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인문사회관 524호 계약학과 교수연구실)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a href="https://www.uhs.ac.kr/sites/gra/index.do">https://www.uhs.ac.kr/sites/gra/index.do</a> )
	전형료	석사과정: 50,000 원 박사과정: 50,000 원 - 지원자 명의로 입학원서 지원시 입금 - 전형료 입금일자 2026. 2. 4(수) ~ 2.10일(화) 16:00	신한 140-008-599510 (예금주:협성대학교)
합격자 발표		2026. 2. 11(수) 10:00	대학원 홈페이지 ( <a href="http://iacf.uhs.ac.kr">http://iacf.uhs.ac.kr</a> )
등록기간		2026. 2. 11(수) ~ 2. 19(수) 16:00	신한은행 가상계좌(개별확인) (토, 일 및 주중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는 납부가 불가능함)
등록금		1. 본교 지정 은행 가상계좌로 각각 납부 (본인 + 산업체)	

납부방법	2.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명의 지정 계좌(통장)으로 필히 납부하여야 함				
	3.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는 지원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본교는 책임지지 아니함				
	구분	입학금(A)	등록금(B)	합계(A+B)	본인 및 산업체 납부
	석사	250,000	1,100,000	1,350,000	본인납부 1,350,000원
		250,000	1,100,000	1,350,000	산업체납부 1,350,000원
	박사	250,000	1,300,000	1,550,000	본인납부 1,550,000원
250,000		1,300,000	1,550,000	산업체납부 1,550,000원	
등록포기 및 안내	1. 등록포기 신청기간 : 개강 전일 까지 2. 산업체 대표 날인 등록포기 신청서 본교 계약학과 홈페이지 <a href="http://iacf.uhs.ac.kr">http://iacf.uhs.ac.kr</a> 자료실 3.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각 1부 (산업체 및 학생) 4. 산업체 사업자 등록증 및 산업체 대표 신분증 사본 및 산업체 통장 사본 각 1부 5. 학생 본인 주민등록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6.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포기 신청 기간 내 (개강 전)에 신청을 하여야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개강일 이후 등록을 포기할 경우 본교 학칙 및 해당 규정에 의해 자퇴 처리됨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함				